

2021년도 제173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2021. 7. 7.(수요일),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석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3분과위원회 위원 5명 참석
 - 심의위원: 최승수(분과위원장), 강태욱, 김경숙, 노정동, 박성호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1-165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분과위원

3.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강나래 전문위원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4.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813건(안건번호 제2021-76671호~77196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1-76671호~76680호(순번 1번~10번)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다수의 불법복제물을 제공한 사안으로,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1-76681호~76701호(순번 11번~31번)는 블로그 및 카페 이용자가 일본 영상물을 제공한 사안으로,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가결함.
그 외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건 게시물 735건은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최승수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 제173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21-165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최승수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강나래 전문위원: 제1호 안전 회의록과 관련하여 5쪽의 워터마크 내용 등이 노출된 부분의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위원님들의 편의를 위해 비식별 처리 대상으로 보이는 부분은 취소선으로 표시해 두었음.
- C 위원: 제1호 안전의 해당 부분은 민원인 신고 건으로 비식별 처리함이 타당함. 나머지 부분은 전부 공개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 B, D, E, A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최승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시정권고 심의 회의 부분에서 민원 관련 워터마크 내용 등은 비식별 처리하여 공개함.

3. 안건상정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강나래 전문위원: 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 목록을 직접 확인해 주시고,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에 따른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해당 없음.

- 최승수 분과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강나래 전문위원: 금일 심의안건은 38개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들이 게시한 813건의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번~11번은 실명의 민원인 1인과 익명의 민원인 1인이 신고한 건임. 웹하드 사이트에서 다수의 만화 불법복제물과 방송물 등을 유료로 제공 중인 사안임. 총 게시물 수는 16건임.

(순번 1번 채증 자료를 보여주면서)해당 저작물의 12권을 30 포인트에 판매하고 있으며, 네이버 시리즈에서 한 화당 300원에 대여, 500원에 소장 가능함.

(순번 10번 채증 자료를 보여주면서)해당 저작물의 2화를 80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2021. 6. 24.에 방영한 2화 전체 분량인 약 75분을 mp4 파일로 제공하고 있음. 네이버 시리즈 on에서 한 화당

2,000원에 소장 가능함.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한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하여 가결 의견으로 검토하였음.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B 위원: 영리 목적으로 다수의 불법복제물을 전송하고 있으므로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가결 의견임.
- C, A, D, E 위원: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함.
- 최승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1번~10번은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을 가결함.
- 강나래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1번~31번은 2명의 민원인이 각 실명으로 신고한 건임. 블로그 및 카페 이용자들이 다수의 일본 애니메이션과 방송물 등을 각각 스트리밍 형식으로 제공한 사안임. 총 게시물 수는 162건임.
(순번 11번 채증 자료를 보여주면서)해당 저작물의 169화를 우리말 자막과 함께 제공한 사안으로, 한화 전체 분량인 약 24분을 스트리밍 형식으로 전송하고 있음. 티빙, 웨이브 등 OTT 서비스에서 회원

가입 후 유료로 이용 가능함.

(순번 18번 채증 자료를 보여주면서)해당 저작물의 205화를 우리말 자막과 함께 제공한 사안으로, 한화 전체 분량인 약 23분을 스트리밍 형식으로 전송하고 있음. 티빙 등 OTT 서비스에서 회원 가입 후 유료로 이용 가능함.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을 고려하면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한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하여 가결 의견으로 검토하였음.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C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을 고려하여 가결 의견임.
- B, A, D, E 위원: 시정권고 요건이 충족되었으므로 가결 의견임.
- 최승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11번~31번은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을 가결함.
- 강나래 전문위원: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순번 32번~526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임. 총 게시물 수는

735개임. 심의대상 게시물 모두 불법 복제한 영화, 방송, 음악, 만화, 게임, SW, 출판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일부 안건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나머지 안건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PC로 접속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람.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92번은 모바일 웹하드에서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를 250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영화 전체 분량인 약 134분을 mkv 파일로 제공함. 2018. 10. 31.에 개봉한 드라마 영화이며, 네이버 시리즈 on에서 2,800원에 대여, 6,000원에 구매 가능함.

(음악 '살짝 설렷어(Nonstop)'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251번은 웹하드 사이트에서 음악 '살짝 설렷어(Nonstop)'를 50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가수 '오마이걸(OH MY GIRL)'의 전집을 압축 파일로 제공함. 해당 음악은 2020. 4. 27.에 발매한 국내 댄스음악이며, 멜론, 네이버 바이브(VIBE) 등 음원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멤버십 유료 가입 후 무제한으로 듣기 가능함.

(순번 443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하여 보여주면서)○○○○ 블로그에서 방송 '○○○○○○○○○○ ○○○○○○○○○ ○○○○○○○○○' ○○○의 캡처본 9건 및 영상물 6건을 스트리밍 형식으로 제공한 사안임. 해당 회차는 2020. 5. 14.의 방영분으로 약 38분가량 다수의 출연자가 노래를 부르는 모습 등이 편집된 영상을 이용하고 있으며, 영상의 형식, 화면 구성 등으로 보아 TV를 통하여 송출되는 화면을 직접 촬영한 것으로 보임.

(심의대상 게시물에 게시된 영상을 순차적으로 재생하면서)각 영상들의 최대 출력 화질은 '1080p'로 고화질이며, 음질 역시 깨끗함. 게시자는 불법복제물을 전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게시물을 작성한 것으로

로 판단됨.

(제2021-131회 제1분과위원회 순번 1085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하여 보여주면서)2021. 5. 31.에 개최한 제2021-131회 제1분과위원회에 본 안전과 유사한 안전이 상정되었음. 제1분과위원회는 블로그에서 방송 '○○○○'의 한 회차 방송분의 일부를 이용하면서 개인적 경험 및 감상과 더불어 다양한 경로로 수집한 사진들을 게시하고 있는 사안에 대하여 부결한 바 있음.

(제2021-131회 제1분과위원회 순번 1085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게시된 영상을 재생하면서)해당 회차는 2018. 6. 26. 방영분으로 약 24분 가량의 특정 출연진의 출연분이 편집된 영상을 이용하고 있으며, TV를 통하여 송출되는 화면을 직접 촬영한 것으로 보임. 영상물은 최대 출력 화질이 '270p'로 저화질이므로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제1분과위원회의 판단이었음.

최근 TV를 통하여 송출되는 화면을 직접 촬영한 모니터링 안전들이 심의에 상정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추가적으로 보고드렸음. 사안마다 영상의 품질과 수준을 검토 및 보고하여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도록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직접 촬영한 영상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의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기 바람.

- D 위원: 게시자가 TV를 통하여 송출되는 화면을 직접 촬영한 영상물이기 때문에 상업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이전 사안은 게시자의 휴대폰 기기 등의 문제로 영상의 화질이 이례적으로 낮은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며, 최근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휴대폰 기기의 성능은 훨씬 우수함. 따라서 이전 사안과 같이 예외적인 경우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논의 및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과는 별론으로, 영상물의 품질을 우리 심의위원회의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봄.

- B 위원: 영화관에서 상영 중인 스크린을 촬영한 일명 '도촬 행위'에 대하여 저작권법 제104조의6과 제137조제1항 3의3에서 별도의 형사 처벌 규정을 두어 엄격하게 처벌하는 것과 같이, 행위의 위법성 여부를 따져 판단해야 하는 것이지 전송된 저작물의 품질에 따라 사안의 경중을 따지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됨. 사안과 같은 인기 예능 프로그램의 경우 저품질로 복제 및 전송 중이라고 하여도 높은 수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따라서 저작물의 품질만을 가지고 시장 대체 가능성에 대하여 쉽게 단언할 수 없을 것임.

- E 위원: 만약 우리 심의위원회가 불법 복제된 저작물의 품질을 판단 기준으로 삼게 된다면, 화소 수, 출력되는 음향 등 매우 구체적인 기준을 확립하여야 하는데 이는 다소 자의적인 성격을 가질 우려가 있음. 더불어 모든 사안에 대하여 불법복제물의 품질을 별도로 판단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게 됨.

- 강나래 전문위원: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전 사안 검토 당시 불법복제물 전송 사실이 분명하기 때문에 침해 사안이라고 판단하였음. (제2021-131회 제1분과위원회 순번 1085번 심의대상 게시물을 다시 보여주면서)다만, 게시물 하단에 게시자의 개인적 경험과 감상 등이 포함되어 있어 삭제 및 전송 중단의 시정권고를 할 경우 그러한 어문저작물이 함께 삭제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경고의 시정권고 가결 의견으로 보고 드렸음. 당시 심의위원회에서 영상물의 품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시장 가치 및 대체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는 점까지 고려하여 부결하였음.

- D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에 게시자가 직접 작성한 글이 포함 되어 있다면 해당 어문저작물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므로 영상의 품질과는 별론으로 시정권고의 필요성에 대하여 재고할 수 있을 것임.
- A 위원: 해당 영상 파일은 ○○○○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것인지?
- 강나래 전문위원: (영상물의 SNS 공유 기능을 보여주면서)그러함.
- E 위원: 해당 블로그를 전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 홍보 목적으로 해당 게시물을 게시한 것으로 보임.
- 강나래 전문위원: 게시판명이 '○○○○ ○○○○○○'이며, (게시판 목록을 보여주면서)○○○○과 관련된 다수의 게시물이 게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B 위원: 해당 블로그는 불법복제물 전송을 목적으로 게시물을 업로드하기보다는 게시자의 고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 중인 것으로 보임.
- 강나래 전문위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이전 사안과 같이 이례적으로 영상물의 품질이 좋지 않은 경우 기타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시정권고의 대상성 및 필요성을 재고해 볼 수 있을 것이나, 영상물의 품질만을 이유로 저작권법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는 것으로 이해됨. 추후 심의에서는 그러한 내용을 반

영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순번 32번~526번은 모두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단순 불법복제물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사안으로 특별한 쟁점 없이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최승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32번~526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제2021-76671호~77196호(순번 1번~526번)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4. 폐회 선언

- 최승수 분과위원장이 제173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1년 제173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 7. 14.

분과위원장 최승수

위원 강태욱

위원 김경숙

위원 노정동

위원 박성호